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군 표 창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국방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민간인 또는 협업 관계에 있는 중앙·지방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 소요가 있으나 「정부표창규정」이 아닌 「군표창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민간인·공무원 등에게는 표창장 대신 감사장을 수여 중임. 따라서, 국방업무에 대한 공적이 있는 민간인·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 수여의 근거를 갖추기 위함.
- 나. 표창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행정적 명칭 대신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방부장관 표창장 수여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도록 개선(제3조)
- 나. 표창의 종류별 명칭을 실제 사용하는 명칭으로 개선(제2·3·4·6조)
- 공적상 ⇨ 표창장, 우등상 ⇨ 상장, 협조상 ⇨ 감사장
- 다. 표창의 대상 중 국방부 소속 직원에 대해 명시화(제3·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군표창규정 일부개정령안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 공적상 2. 우등상 4. 협조상”을 “1. 표창장 2. 상장 4. 감사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공적상)”을 “(표창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를 “①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과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과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표창장의 수여대상은 「정부 표창 규정」을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4조 제목 “(우등상)”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를 “군사에 관한 ~”로 한다.

제6조 제목 “(협조상)”을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협조상은 군인·

군무원·공무원(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군인·군무원·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u>공적상</u> 2. <u>우등상</u> 3. 삭제 <2017.9.19> 4. <u>협조상</u>	제2조 (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u>표창장</u> 2. <u>상장</u> 3. 삭제 <2017.9.19> 4. <u>감사장</u>
제3조 (<u>공적상</u>) <u>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 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 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u>	제3조 (<u>표창장</u>) <u>①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대원과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군무원 및 예비군 대원과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표창장의 수여대상은 「정부 표창 규정」을 따른다.</u>
제4조 (<u>우등상</u>) <u>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 (생략)</u>	제4조 (<u>상장</u>) <u>군사에 관한 ~ (생략)</u>
제6조 (<u>협조상</u>) <u>협조상은 군인·군무원·공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 (생략)</u>	제6조 (<u>감사장</u>) <u>군인·군무원·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직할 기관을 포함한다)인 사람과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 (생략)</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54